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487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83,442,847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1,257,1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① 2014. 6. 2. [redacted]군 B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1,429.32㎡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8,905,630원, ② 2015. 7. 13. 위 토지 지상에 지하수 시설물 2개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353,380원, ③ 2016. 3. 24. 위 토지 지상에 건물 1,233.27㎡을 증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63,318,820원, ④ 2017. 7. 28. 위 토지 지상에 건물 169.69㎡(이하 위 토지, 시설물,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13,072,730원, 총 115,650,5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자산이 원고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별지2 기재 취득세 등 합계 83,442,847원[1]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가 2018. 10. 1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서(갑 제4호증)에는 그 합계액이 '83,442,84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취득세 등의 합계액인 '83,442,847원'의 오기(誤記)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 법인설립 당시 감면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원고는 2014. 2.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성동구에서 법인설립을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조심2015지0980(2015. 11. 26.) 판결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개시하여도 법인으로서 활동을 개시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9. 10. 18.자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를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2019.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해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등 합계 111,257,13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한 적도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원고도 2019. 11. 20.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법인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지방분산화 촉진 등에 기여한 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의 사업 준비, 사업 창출,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4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기반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공장부지 취득을 위한 물색행위 또는 입찰준비를 한 시점을 실질적인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자산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2014. 6. 2. 이 사건 자산 중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2015년 이후로 이 사건 자산 중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다.

2)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성이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위법하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고는 2014. 6. 2.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위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맥주제조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의 주요 맥주제조설비는 모두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위 양조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0. 법인설립등기부상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요식업 컨설팅 · 기획, 맥주제조장비 및 부대품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14. 3. 1.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5. 4.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증평군 B'로 이전한 후 2016. 10. 17. 맥주제조면허를 취득하였고, 2016. 11. 16. 식품제조가공업(영업의 형태: 주류제조) 영업등록을 하였으며, 2017. 1.경부터 직원을 고용하여 2017. 7.경 맥주 생산을 시작하였다.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산 취득은 위 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명백한 특혜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규정은 자의적 판단 여지를 배제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정의(定義)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상 위 제120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2014. 12. 31. 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위 규정상의 창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에 관하여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중소기업 법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상의 창업일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는 원고의 창업일이 언제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즉, 원고의 창업일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인설립등기일인 2014. 2. 1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러한 결론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와도 부합한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로는 중소기업의 창업일에 관하여 명시적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에서 사용된 '창업일'의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서 사용된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참조).

마)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창업일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물색행위나 입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준비행위는, 독자적인 주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모호하고 특정성이 부족하여 해당 기준에 의할 경우 중소기업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이와 관련,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7년 최초로 직원을 고용하고 맥주 제조 및 판매를 개시하여 그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그때부터가 창업일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9. 9. 23.자 준비서면에서는 '청주시 증평군에서 사업의 준비행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고 다소 모호하게 주장하였다가, 2019.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물색행위 또는 입찰준비시점이 창업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바)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진 2014. 2.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인 '[redacted]시'에서 창업을 하였으므로, 위 제12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3)]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이와 관련 앞서 원고의 주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의 취득 시기에 따라 근거 법률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판결문 4쪽 참조).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그 대신 사실상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상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오로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과도 일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재판장 판사 신우정

판사 김홍섭

판사 윤상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별지1

(단위: 원)

순번	취득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	2014. 6. 2.	33,393,690	1,669,685	3,339,370	38,402,745
2	2015. 7. 13.	300,360	30,036	0	330,396
3	2016. 3. 24.	53,827,920	3,844,852	3,075,882	60,748,654
4	2017. 7. 28.	10,433,840	745,275	596,220	11,775,335
	합계	97,955,810	6,289,848	7,011,472	**111,257,1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별지2

(단위: 원)

순번	취득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	2014. 6. 2.	25,045,268	1,252,264	2,504,527	28,802,059
2	2015. 7. 13.	225,270	22,527	0	247,797
3	2016. 3. 24.	40,370,940	2,883,639	2,306,911	45,561,490
4	2017. 7. 28.	7,825,380	558,956	447,165	8,831,501
	합계	73,466,858	4,717,386	5,258,603	**83,442,84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별지3

<납부내역>

(단위: 원)

순 번	취득일	부과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	2014.6.2.	2014.6.2.	32,713,690	3,271,360	1,635,680	37,620,730
2	2015.7.13.	2015.7.15.	130,420	0	13,040	143,460
3	2015.7.13.	2015.7.15.	130,420	0	13,040	143,460
4	2016.3.24.	2016.5.23.	48,745,750	2,785,470	3,481,830	55,013,050
5	2017.7.28	2017.8.4.	6,612,140	377,830	472,290	7,462,260
6	2014.6.2.	2018.10.17.	1,135,050	99,900	49,950	1,284,900
7	2015.7.13.	2018.10.17.	61,140	0	5,320	66,460
8	2016.3.24.	2018.10.17.	7,475,350	369,080	461,340	8,305,770
9	2017.7.28.	2018.10.17.	5,058,400	245,370	306,700	5,610,470
합 계			102,062,360	7,149,010	6,439,190	115,650,5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별지4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1

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끝.